

2011.10.24 미래정책연구실

※ 본 자료는 지난 10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재해대비 내년도 농어업재해보험 예산 확대 반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개요

-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11년 50개 품목에서 '12년 61개 품목으로 확대
 - 2012년도 11개 품목을 신규 도입하여 시범사업
- 사업지역 전국 확대품목을 '11년 28개 품목에서 '12년 37개 품목으로 확대 (시범사업중인 9개 품목을 본사업으로 전환)
-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2년 예산안을 '11년 예산보다 200억원 증액된 1,567억원 반영
 - ※ '12년도 농어업재해보험 예산 : ('10) 1,029억원 → ('11) 1,367 → ('12반영) 1,567 (+200억원)

□ 농수축산 부류별 계획

-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시범사업으로 5개 추가하여 보험대상품목을 35개로 확대하고, 전국 판매대상 품목은 8개 추가하여 20개로 확대할 예정임. 한편 '06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과수 7개 품목에 대한 목표 가입률을 지난해보다 4.0%p 상향조정하여 44.0%까지 제고할 계획
 - 농작물재해보험 : ('10) 677억원 → ('11) 972 → ('12반영) 1,140 (+168억원)
 - 특히, 내년부터 **벼 재해보험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의 수혜가 가능하도록 함.
 - ※ 대상품목 : ('09) 20 → ('10) 25 → ('11) 30 → ('12) 35 → ('13) 40개
 - ※ 전국판매 : ('09) 7 → ('10) 7 → ('11) 12 → ('12) 20 → ('13) 25개

- '12년 신규도입예정(5품목) :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 '12년 전국확대예정(8품목) : 벼, 고추, 수박, 고구마, 옥수수, 밤, 마늘, 매실
- 본사업 과수 7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뽕은감

- (가축재해보험) 신규 시범사업으로 1개(오소리) 추가하여 보험대상품목을 16개로 확대하고, 목표가입률을 금년보다 2.4%p 높여 56.5%로 상향 조정
 - 가축재해보험 : ('10) 309억원 → ('11) 331 → ('12반영) 357 (+26억원)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신규 시범사업으로 5개 추가하여 보험대상품목을 10개로 확대하고, 목표가입률을 9.0%p 높여 29.0%로 상향 조정
 - 특히, 금년까지는 동일 가두리에서 2어종이상 혼합 양식(조피볼락+참돔+쥐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이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 '12년 신규도입예정(5품목) :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기타볼락

※ 부록 참고.

1.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도입현황(연도별)
2.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별 사업지역

부록 1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도입현황(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2001	사과, 배	소, 돼지, 말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2003		닭	
2004		오리	
2005		꿩, 메추리	
2006	뽕은감	칠면조, 사슴	
2007	밤, 찰다래, 자두	거위, 타조	
2008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양	넙치
2009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벌	
2010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토끼	전복
2011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5월), 굴(10월), 김(11월)
소계	30	15	5
2012 예정	인삼, 멜론, 파프리카, 오디, 녹차	오소리	어류(참돔, 돌돔, 감성돔, 취치, 기타볼락)
소계	35	16	10
2013	5품목(미정)	-	5품목(미정)
합계	40	16	15

주: 밑줄 친 품목은 본사업 품목임.

부록 2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별 사업지역('12년 기준)>

구분	품목	사업지역	
농작물재해보험 (35개품목)	본사업 (20품목)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뽕은감, 찰다래, 자두, 콩, 양파, 감자, 밤, 수박, 고추,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전 국
	시범사업 (15품목)	대추	보은, 경산, 밀양
		시설딸기	논산, 담양, 밀양, 진주
		시설오이	순천, 공주, 춘천
		시설토마토	부산광역시, 김해, 춘천
		시설참외	성주
		시설호박	진주, 의령, 청원, 평택
		시설풋고추	밀양, 나주, 당진
		시설장미	고양, 김해, 전주
		시설국화	부산광역시, 창원, 태안
		복분자	고창, 정읍, 순창, 함평
		인삼, 멜론, 파프리카, 멜론	미 정
		시설하우스	과주·광주·포천(경기), 진천(충북), 고창(전북), 영암(전남), 예천, 상주, 고령(경북)
		가축재해보험 (15개품목)	본사업 (13품목)
시범사업 (3품목)	토끼, 관상조, 오소리		전 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0개품목)	본사업 (1품목)	넙치	전 국
	시범사업 (9품목)	전복	완도·진도·해남·강진(5권역), 신안, 여수, 고흥, 태안
		조피볼락	순천·여수·광양·장흥·보성·고흥(6권역), 사천·통영·하동·남해·고성(7권역)
		굴	5권역, 6권역(예정)
		김	6권역, 7권역(예정)
참돔, 돌돔, 감성돔, 취치, 기타볼락	미 정		

주간농업 농촌동향 **폭염, 이상수온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 본 자료는 지난 10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내년부터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추진 배경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11.7.14 공포)으로 **농업재해에 “폭염” 피해가 추가되고, 어업재해에 “이상수온”이 추가되어** 시행규칙에 세부 지원 규정 마련
 - 시·군별 피해 일정규모 이상 시 국고보조, 일정규모 미만 지자체 지원

<현행 국가보조 지원기준>

- 농업재해 국고보조 및 지원기준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일조량부족 등 : 피해면적 50ha이상
 - 서리, 우박, 설해 : 피해면적 30ha이상
- 어업재해 국고보조 및 지원기준
 - 이상조류·적조현상 : 수산양식물 피해액 3억원이상
 - 태풍·해일 :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시설 피해액 3억원이상

□ 주요 내용

- (폭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시·군별로 50ha이상** 경우, 대파대(種苗代金), 및 농약대 지원
- (폭염에 의한 가축피해) 현행 규정에 따라 농업용시설·농경지 등과 같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입식비(가축이 죽은 경우 어린 가축구비) 등이 지원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동해, 일조량부족 등 : 피해면적 시·군별 50ha이상

※ 서리, 우박, 설해 : 피해면적 시·군별 30ha이상

-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피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 입식비(稚魚代金) 등을 지원

※ 양식수산물의 저온·냉해피해는 그 동안 이상조류(異常潮流)에 의한 피해로 지원 하여 왔으나, 이번에 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수산양식물의 저온·냉해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상수온(異常水溫)을 명시한 것임.

- (알법관련)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법제처 초안 제공) 개정 지침에 따라 용어 등 순화 등 자구 수정